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3회 임시회(2019. 9. 24.)

2019년 제2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

북지도시위원회

전문위원 신준호

2019년 제2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19-126
----------	--------

2019. 9. 24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출경위

- 가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- 나. 제 출 일 : 2019. 9. 9.
- 다. 회 부 일 : 2019. 9. 10.

2. 추가경정예산안 총괄

가. 세입예산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	증감률
총 계	16,499,926	14,028,265	2,471,661	17.62%
일반회계	9,111,774	9,111,774	0	0.00%
특별회계 (발전소,건축안전)	7,388,152	4,916,491	2,471,661	50.27%

나. 세출예산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감	증감률
총 계	32,274,512	29,597,626	2,676,886	9.04%
일반회계	25,708,702	25,413,477	295,225	1.16%
특별회계 (발전소,건축안전,주차장)	6,565,810	4,184,149	2,381,661	56.92%
물건비	239,240	103,760	132,480	124.09%
자본지출	190,479	386,500	△196,021	△50.72%
예비비 및 기타	6,136,091	3,690,889	2,445,202	66.25%

3.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조직별 현황

가. 일반회계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비교증감	증감률
총 계	25,708,702	25,413,477	295,225	1.16%
주택과	1,000,815	1,000,815	0	0.00%
도시계획과	2,557,925	2,622,925	△65,000	△2.48%
건축과	925,079	925,079	0	0.00%
도시안전과	651,553	561,328	90,225	16.07%
환경과	2,972,804	2,972,804	0	0.00%
공원녹지과	17,600,526	17,330,526	270,000	1.56%

나. 특별회계(발전소, 건축안전, 주차장)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비교증감	증감률
총 계	6,565,810	4,184,149	2,381,661	56.92%
도시계획과	386,760	476,760	△90,000	△18.88%
도시안전과	26,459	0	26,459	순증
환경과	6,152,591	3,707,389	2,445,202	65.95%

4.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

가. 일반회계(증·감액 및 신규사업)

(단위:천원)

부서·편성목	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
도시계획과	1)합정재정비축진계획 변경 용역	0	65,000	△65,000
도시안전과	1)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	21,666	0	21,666
	1)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 심의위원회 수당	2,100	0	2,100
	1)완강기 구매 및 설치	40,000	0	40,000
	1)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	26,459	0	26,459
공원녹지과	1)샛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	50,000	0	50,000
	1)공공공지 절개지 정비	20,000	0	20,000
	1)가로수 결주지 정비	50,000	0	50,000
	1)교통섬 및 횡단보도 그늘목 식재	50,000	0	50,000
	1)학교숲조성사업	50,000	0	50,000
	1)수직정원 조성사업	50,000	0	50,000

나. 특별회계(증·감액 및 신규사업)

(단위:천원)

부서·편성목	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
도시계획과 (주차장)	1)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개발 민간 제안서내용 검토 수당	70,000	0	70,000
	1)건고싶은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민자 적격성재조사 검증 수당	140,000	100,000	40,000
	1)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타당성 검토 용역	0	200,000	△200,000
도시안전과 (건축안전)	1)민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	22,480	0	22,480
	1)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	3,979	0	3,979
환경과 (발전소)	1)예비비	6,136,091	3,690,889	2,445,202

5. 검토결과

가. 예산규모

- 2019년도 제2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억7,166만1천원 증액된 164억9,992만6천원임.
- 도시계획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4억9,088만7천원, 전년도이월금 9억5,431만5천원과 도시안전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전입금 2,645만9천원이 증액됨.
-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9,522만5천원 증가(1.16%)된 141억5,704만6천원이고, 특별회계는 23억8,166만1천원 증가(56.92%)된 65억6,581만원임.

나. 부서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

-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6억2,292만5천원에 6,500만원 감액된 25억5,792만5천원(△2.48%)으로 합정재정비축진계획 변경용역의 시비재원부족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재추진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음.

- 도시안전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5억6,132만8천원에 9,022만5천원 증액된(16.07%) 6억5,155만3천원으로 편성내역은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사무관리비, 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 심의위원회 수당, 완강기 구매 및 설치비,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음.
-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73억3,052만6천원에 2억7,000만원 증액된(1.56%) 176억52만6천원으로, 편성내역은 셋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5,000만원과, 공공공지 절개지 정비 사업, 가로수 결주지 정비, 교통섬 및 횡단보도 그늘막 식재 사업, 학교숲 및 수직정원 조성사업등의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음.

다.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

- 주차장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액은 3억6,676만원이며, 편성내역은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타당성 검토용역의 사업추진 방식 변경(정부고시→민간제안)으로 2억원을 감편성하고, 같은 사업의 민간제안서 검토 수당으로 7,000만원, 걷고싶은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민자적격성 재조사 검증비용 실태가 재파악되어 기정액 1억에서 1억4,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음.
-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액은 61억5,259만1천원이며, 편성내역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음.
- 건축안전특별회계 도시안전과 추가경정예산액은 2,645만9천원으로 편성내역은 민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과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지원 사업비로 순증 편성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과 달리 예산편성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투자수요 발생, 국·시비보조금 분담비율 변동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,
- 금번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사업별 내용을 살펴 보면 도시안전과 ‘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’를 위해 2,166만6천원을 신규 편성함. 이는 2018.1.18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제8조¹⁾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관리가 의무화되어 2019년 본 예산 편성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방법, 조사단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미편성된 부분을 편성한 것으로 노후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임사무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판단됨.
- 피난구조설비 구매와 심의위원회 수당,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[2019.6.7.]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」[2019.7.11.] 시행됨에 따라 신규 편성한 것으로서 법리적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, 완강기 구매 및 설치의 경우 관내 대상지의 사전 조사

1) 제8조(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·고시하여야 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·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해소되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·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와 주민들의 신청여부에 따라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임.

- 학교숲 및 수직정원, 교통섬 등의 식재사업은 ‘수목 500만그루 공기청정숲 조성’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책 추진 차원의 관점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, 서울시 예산(2,400만원)으로 기 시행한바 있음.(‘교통섬 및 횡단보도 그늘목 식재 추진계획’) 사업 추진시 대상지의 철저한 사전현장조사와 시범 조성의 구민 의견등을 청취 후 미세 먼지 저감 효과가 탁월한 수목을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.
- 또한, 걷고싶은거리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은 사업 추진 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으로 사업기간의 소요가 상당히 있었음에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음. 향후에는 좀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기타 신규 사업은 효과성 및 긴급성, 교부금 및 보조금 확보 가능성, 사업 직접 수행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에 계상·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여부와 예산절감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할 것임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[관 계 법 령]

「지방자치법」

제 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

「지방재정법」

제 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